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614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안세환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4,11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3. 22.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113,6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284(본소), 2015가합24291(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6. 12. 15.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154,11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게 69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154,113,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였던 E의 남편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가, F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자, 관련 사건 소송 중인 2015. 9. 30.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약 1달 사이에 소외 회사의 직원, 차량, 거래처, 설비 등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사해행위로서 2016. 3. 22.자로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게로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및 중첩적계약인수를 하였다.
- (2)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가 채무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양수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의 증거로, 갑 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일부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E의 배우자로서 과거 일정 시기 동안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한 사실, ②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331호 사건에서 증인 G이 ‘소외 회사와 피고는 사장이 F으로 같고, 직원들이나 설비, 거래처가 똑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③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2015. 2.부터 2018. 8.까지 소외 회사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었고 실질적 경영은 F이 했으며, 2016. 3.경 소외 회사의 시설, 집기, 거래처, 차량 등을 피고로 옮겼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① D도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원고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등 이 사건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가 어렵고, ② 따라서 F이 피고를 설립할 당시인 2015. 9. 30.(등기부상 회사성립일) 무렵과 원고 주장의 포괄적 영업양도양수일로 특정된 2016. 3. 22. 무렵에 과연 F이 소외 회사를 실질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인정을 하기가 어렵다.

(3) 그러므로 앞서 든 증거 및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법적 주장의 전제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 즉, F이 소외 회사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양자의 각 직원, 설비, 거래처 등이 대체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종전 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것이지 F에 대한 것이 아니고, ② 소외 회사와 피고는 엄연히 법인격이 다르며, ③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계약이 있으려면 적어도 피고가(F이 아니라) 주식회사인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인수하는 등 피고와 소외 회사 주주 등과 사이의 계약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지 소외 회사의 일정 시기의 경영자와 피고의 경영자가 동일인이고 직원이나 설비, 거래처 등이 대체로 같다고 하더라도(이 사건에서 밝혀진 것은 각 일부가 동일하다는 것뿐이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營業을 양수하는 계약이 존재한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요컨대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을 뿐이므로, F이

설령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피고를 설립하고서 소외 회사의 대부분의 인력 및 설비, 거래처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 및 피고가 F와 사이에서 법인격이 부인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법적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기 위한 방편으로 두 주식회사 사이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한 관계가 아님에도 양 회사 사이에서 포괄적 영업양도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법률관계를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다.

(4) 결국 더 나아가서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을 각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